

분리배출 표시 개정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배출 표시제도가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방법은 도안을 간소화하고 한글을 쓰는 등 국민들의 분리배출, 분리수거가 수월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 된 분리배출표시 방법을 알아본다.

● 한국의 분리배출 표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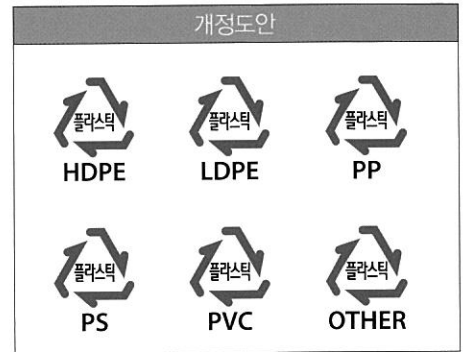
주요개정사항

- 도안 내부 표시문자 중 철, 알루미늄은 "캔류",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표시
- 표시 도안의 색상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체와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야 하며,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1도, 흑색 등 인쇄 가능)
-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의 "분리배출"문구를 삭제
- 분리배출표시 도안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10-139호(2010. 9.27)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분리배출표시 신규 개정도안 적용시점: 2012. 7. 1. 생산·제조 분부터

※ 제도안내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자원순환 > 제도운영지원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관련근거: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 6조]

구분	적용예외 대상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표시 포장재(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 (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일괄표시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재에 대한 재질 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Separate Discharge Indication

As with the EPR system, the Separate Discharge Indication system is introduced to help the public to recognize the packaging materials liable for the EPR easily for separate discharge. The packaging materials liable for the EPR are required to be indicated with the separate discharge design and those not liable for this system may obtain the indication by obtaining the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via the designated approval application process.

Items Liable for the Separate Discharge Indication
Groceries, agricultural/fishery/livestock products, detergents, cosmetic goods, medical supplies and quasi drugs, butane

gas products, insecticides/sterilizers, rubber gloves products, paper goods, cartons used as the packaging materials of the clothing products, glass bottles, metal cans, packaging materials and disposable plastic bags/shopping bags in synthetic resins, film/sheet-type packaging materials for electrical appliances and packaging materials in expanded synthetic resins

Items Required of Designation

Products/packaging materials that use papers, metals, glasses, plastics besides those liable for recycling

분리배출표시 F&Q

1. 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 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일"을 기준으로 수입품의 경우 "수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예를 들어 2010년에 제조된 제품이 2012년 12월에 출고되는 경우 제조일이 개정안 시행전이므로 개정 도안 미사용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재질별 도안 외부색채 관련규정은 강제사항인지?
 - ▶ 외부색채 관련 규정은 권장사항이며 전체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1도 사용 가능)
3. 용기형태의 페트재질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 포장재의 형태(플라스틱, 비닐류)에 따른 구분 없이 삼각형 도안 안에 "페트"로 기재
4. 플라스틱의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나 도안내부에 "플라스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글자가 몽개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 "프라스틱" 또는 "PLASTIC"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 ▶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레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5. 무표시포장재란?
 - ▶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로 분리배출표시 생략 가능
6. 종이박스의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투명 비닐창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지?
 - ▶ 주요재질이 종이인 박스인 경우 투명 비닐창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7.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 ▶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임 예로는 과자봉지, 파우치 등이 있음.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 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됨
8. 종이에 합성수지를 라미네이팅(접합) 한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 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접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되어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단면 접합의 경우에도 주요 구성부분이 합성수지인 경우 합성수지로 분류되어 비닐류(OTHER)의 분리배출표시를 적용함
9. 분리배출표시 지침 개정으로 지정승인을 기 득한 제품·포장재도 지정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 지정승인을 받은 제품·포장재의 상표나 재질 등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승인 절차는 불필요함
10. 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 포장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분리배출표시와 동시에 사용 가능한지?
 - ▶ 긴급적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만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포장재에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의 분리배출표시와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 동시 사용 가능
11.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 세부표기 사항은?
 - ▶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PE로 표시함

재질계열 (표시 세부재질)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D-PET, E-PET, F-PET, PETG
PVC	PVC, PVDC, PVCA